

보도시점 (온라인) 2026. 9. 18.(금) 16:00
(지면) 2026. 9. 19.(토) 조간

일일이 누리집 안 찾아도 된다 국가 기록역사 자료, 인공지능으로 한곳에서 검색

- 국가기록원-국사편찬위원회, 기록정보·역사 자료 연계·공동 활용 업무협약 체결
-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기반 ‘범국가 기록정보 통합활용체계’ 첫 시범 검증 착수
- 실증 결과 바탕으로 다양한 공공·민간 기관으로 연계망 확대 예정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은 9월 18일(금)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에서 국사편찬위원회와 ‘기록정보와 역사 자료의 연계·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처 협업 기반 인공지능(AI) 확산’ 사업과 ‘공공 AX 프로젝트’를 통해 각각 인공지능(AI) 기록정보 검색·요약·추천 서비스와 근대 다문자 자료의 인식·검색·번역 서비스를 개발해 실증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축적한 인공지능 활용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의 기록정보와 국사편찬위원회의 역사 자료를 지속해서 연계하고 공동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를 계기로 국가기록원이 연구 중인 ‘범국가 통합 활용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증할 계획이다.

>> 흩어진 기록·지식자원, 소장기관 몰라도 인공지능이 한 번에 찾아준다

현재 국민이 특정 정책이나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찾으려면 해당 자료를 어느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워, 여러 기관의 누리집에 일일이 접속해 각각 검색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국가기록원이 현재 연구·설계 중인 ‘범국가 기록정보 통합활용체계’는 모든 자료를 한곳에 모으지 않고 기관별 데이터와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이용자의 질문에 맞춰 관련 기관의 자료를 찾아 검색 결과를 종합하고 출처와 원문 위치까지 안내하는 방식이다.

특히, 각 기관이 관리해 온 기록과 역사 자료를 서비스의 기반으로 삼아 이용자가 소장자료의 원문을 직접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 보유 자료에 기반한 신뢰성 높은 기록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국사편찬위원회와 시범 검증 착수, 범국가 통합 활용 협력 기반 마련

국사편찬위원회와의 협력은 이러한 범국가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실제 기관 자료를 통해 처음 검증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1948년 정부수립 이후의 기록과 국사편찬위원회의 근대 역사 자료를 연계하면, 근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정책과 사회 변화의 흐름을 폭넓게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서로 다른 구조의 기록정보와 역사 자료를 연계해 관련 자료를 함께 찾을 수 있는지 시범적으로 검증한다. 이 과정에서 기관마다 다른 용어와 분류체계를 연결하는 기준을 세우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방안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기록정보와 역사 자료의 상호 연계 및 공동 활용,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역량 강화와 경험·기술 공유, ▲기록·정보·역사 자료의 연계·활용 기반 조성 및 대국민 이용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실증을 통해 기록정보와 역사 자료의 공동 활용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가기록원은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기록·지식자원을 보유한 다양한 공공·민간 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후속 구축 사업을 기획하고 필요한 자원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양 기관은 기록물 평가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기록원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사료전문가가 기록물 평가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추진하고, 향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 이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축적한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기관 간 기록정보 연계로 확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각 기관의 고유한 데이터 체계를 존중하면서도 국민이 기관의 경계를 넘어 관련 기록과 지식자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철저히 추진하고, 후속 구축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가기록원 서비스정책과	책임자	과장	곽정 (031-750-2221)
		담당자	연구관	박지영 (031-750-2028)



국가기록원-국사편찬위원회 간 기록정보·역사자료 연계·공동활용을 위한 협약서

국가기록원과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기록정보 및 역사자료의 활용 증진과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기록정보 및 역사자료의 활용을 증진하고, 관련 사업과 정보 교류를 통하여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 양 기관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며, 각 기관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존중한다.

② 양 기관은 각 기관의 기존 데이터 관리체계와 운영방식을 전제로 하여, 상호 활용 가능한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③ 양 기관은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자료, 정보, 경험 및 성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제3조 (협력내용)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기록정보와 역사자료의 상호 제공·연계 및 공동 활용
2.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기록정보·역사자료 서비스 역량 강화 및 관련 경험·기술 공유
3. 기록정보·역사자료의 데이터화 및 대국민 서비스 모델 개발
4. 기관 소장 자료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연구·학술 사업 협력
5. 기록물 평가 분야에 국사편찬위원회의 사료전문가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함
(추후 공공기록물법시행령 개정 시 명문화함)
6. 기타 양 기관의 협력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협력의 방식) 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협력 범위, 방식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자료 및 정보의 취급) ① 양 기관은 협력 과정에서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관련 법령과 각 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한다.

② 비공개 또는 이용 제한이 필요한 자료는 상호 협의된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며,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③ 공개 가능 자료의 활용 범위와 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 협의를 거친다.

제6조 (비밀유지) ① 양 기관은 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 기관의 비공개 정보 또는 업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협약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본 조의 의무는 본 협력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7조 (협약의 변경 및 해지) ① 본 협약의 내용은 양 기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어느 일방은 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해지 30일 전까지 상대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효력) 본 협약은 양 기관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제7조에 따라 해지될 때까지 유효하다.

제9조 (기타)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력서 2부를 작성 및 서명하고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9월 18일



원 장 이 용 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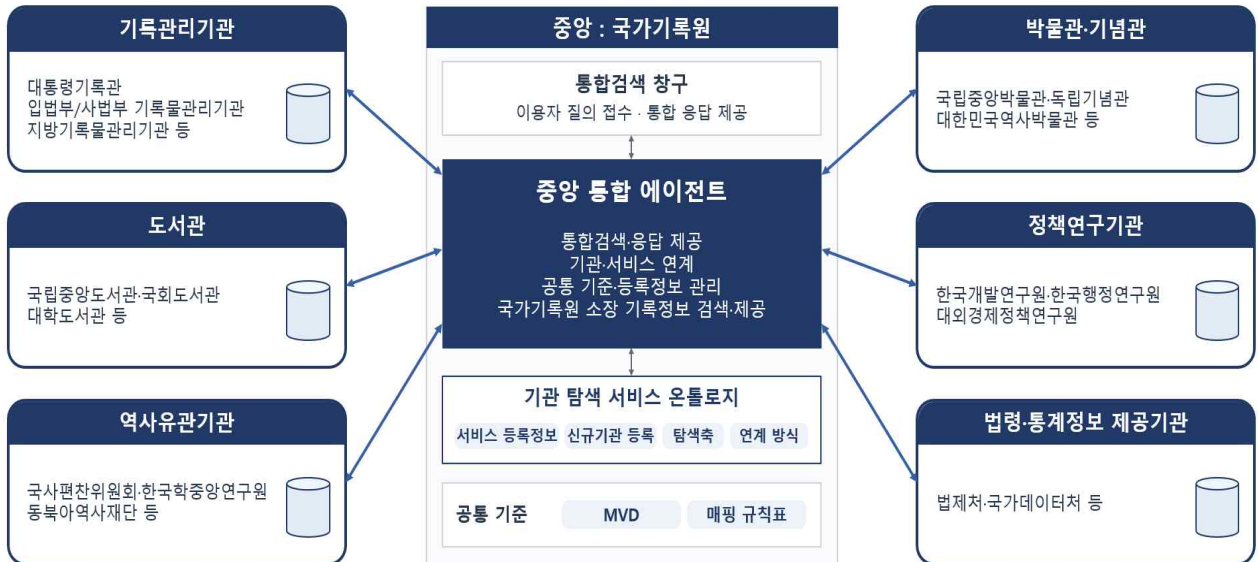


위 원 장 허 동 현

참고2

법국가 통합활용 서비스 목표모델 및 시스템 아키텍처

서비스 목표모델



※ 연계 방식은 기관별 여건에 따라 Agent-API-MCP 등을 적용함.

※ 기관명은 주요 연계 검토 대상의 예시이며, 참여가 확정된 기관을 의미하지 않음.

시스템 아키텍처 구성도

